

폭력행위자 징계 및 지도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학생중 폭행 및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학칙을 위반한 학생을 특별 지도하기 위한 제반업무와 관련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 얼차려, 언어 폭력, 신체에 대한 폭력 등을 행하여 학칙을 위반한 학생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징계 후 학칙에 따른다.

제3조 (지도) ① 각 학과 학년 담임지도교수는 학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1. 얼차려 등 학칙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에 관한 사항.
2. 학칙 위반자의 교내·외 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

② 폭력 행위의 예방 및 지도를 위해 담임지도교수 및 학과장은 해당부처에 자료제공이나 기타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담임지도교수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담임지도 교수에게 폭력 행위의 예방 및 지도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④ 생활관 입사생의 폭력 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는 생활관장이 하며, 담임지도교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일지 기록) 지도교수는 폭력 행위(가능)자를 대면하여 지도한 후 반드시 상담일지에 지도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상담일지 보관 및 제출) 지도교수는 폭력 행위(가능)자의 상담일지를 학기 중에 보관하여야 하며, 학기말에는 종강일까지 학생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재가에 의한다.